

우리는 80년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화 : (02) 765-4126

FAX : (02) 762-4126, (02) 771-2990

홈페이지 : samchung77.or.kr

E-mail : jys03090@hanmail.net

**삼청교육대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2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삼청교육대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2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개 회 사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공청회의 기초발표와 토론·토론사회를 맡아주신 본 단체 특별위원님 및 각 대학 교수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 축사를 해주시는 각계대표와 참석하신 내외 귀빈 및 전국 각지에서 오신 본 단체 회원여러분께 그 관심과 성의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공청회는 삼청교육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배상을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경과보고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단체가 결성 된지 올해로 14년이 되었고 1980년 삼청학살 만행 당시부터는 2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13대, 14대, 15대국회 10년 세월이 훨씬 넘도록 제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특별법안"을 장기 계류시키다가 마지막에 폐기시키는 과정을 3회나 겪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1980년 재판도 하지 않고 범법자로 둔갑되어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 연병장에 마구잡이 끌려가서, 몽둥이로 혹독한 매질과 고문, 채벌, 총질 등으로 끌려간 국민 4만 여명 전원이 장애인, 환자, 정신질환자, 가정파탄, 가난, 독신, 등이 되었고 또한 부대내 사망자, 골병들어 나와서 오늘날까지 죽어가고 있는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이 되고 있음이 짐작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고난 속에 해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삼청교육 사건은 6공 당시 "노 대통령 시국 관련 담화"에 5공 인권비리 3건인 광주민주화, 80년 해직공직자, 삼청교육대 사건을 명예회복 및 보상을 약속한지도 14년이 되었고, 2건을 해결한지도 수년이 되었으나, 유독 삼청교육대 피해자만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사법부, 입

법부, 행정부 전체가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설사 지각없는 변호사가 먹이사슬로 부로카 들을 동원하여 재판질을 유도하고, 지각없는 판사가 국민 인권을 경시여기고 헌법에 명시된 형평에 맞지않는 오판을 하여 기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가의 사명인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거늘... 헌법제 11조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5공 인권비리 3건 중 광주민주화 운동, 80년 해직 공직자 2건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고, 또한 북한 주민이나, 근래에 풍수해를 당한 피해 국민들과도 비유할 때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음이 증거가 되는 것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및 생활안정 자금까지도 이 우리 회원들에게만 제외시키고, 거론도 않고 있는 대한민국 처사에 대하여 우리 피해자들은 울분과 격분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삼청교육대 명예회복 및 피해자 배상 특별법"제정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를 기대하며, 본 단체가 2001년 8월 27일에 입법 청원한 민원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된지 1년이 넘었음을 자각하고 국회 국방위원님들의 적극 협력을 요망하며, 오늘 이 공청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2년 9월 30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회 장 전 영 순

격 려 사

인권유린범죄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지난 시절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자행된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진상규명의 타당성과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위 사회악 일소를 위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종 사회악사범과 시국사범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검거하여 순화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다수의 희생자를 낸 우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권력과 패도(道)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권의 유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침해가 있는 곳에는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의로운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참다운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백절불굴의 정신을 지닌 인간의 역사였고,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싸워온 투쟁의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인권은 그 어떠한 명분과 구실로도 제약받거나 유보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권유린범죄를 응징함에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인권의 가치와 존엄성을 위한 힘찬 전진의 발걸음에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신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소중한 결실로 창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9. 30.

국회의원 김 충 조(金忠兆)

발신국: 서울(002)
경(국회):35

전화 12910141110095 09/11 10:43
136 - 0160

발신인 ☎ : (02)788-2655 국회의원 김 근 태
주 소 : 서울시 전화765 4126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연명
수신인 : 전영순, 상임회장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좋은 결실 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김 근 태

전 보 배 달 국
서울시 연건동 128-9
KI 혜화지사
110-460 11:136 0160

연명
서울시 전화765 4126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전영순, 상임회장님

삼 인 력 연 혁

- 1) 1988. 8. 5. 정오에 종로구 당주동 이철호 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인수 (평민당 강능 양양 지구당 위원장), 유영근 (목사), 전영순(주부), 이적(기자), 정충재(교사), 등이 10여명이 모여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 배상을 위한 투쟁을하기로 결의 하였음.
- 2) 1988. 8. 10. 정오에 중구 평민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50여명이 모여 "전국 삼청교육 진상규명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원선출을 하였음.
공동투쟁위원장 : 정인수 유영근, 공동부위원장 : 전영순 정충재,
대변인 : 이적, 사무총장 : 선창영, 사무처장 : 김수배 등 전국 각 지부장을 선출 하였음.
- 3) 전영순 부위원장은 1988. 8. 12.~8.15 까지 각 잡지, 엔터프라이더, 여성중앙, 여성동아, 주부생활, 여성조선, 주간여성, 문화일보, 등 8월에 8회 체험 고발수기를 기록 하였고 1988. 8. 18. 18시에 기독교방송 현장르뽀에 방송 하였음.
- 4) 1988. 9. 정인수 유영근 공동위원장 전영순 부위원장 이적 대변인 4명은 한겨레 신문사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촉구 하였음. 정인수 위원장은 강원일보에 수차 보도 연계 하였음."성명서"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명예회복 하라를 발표하였음.
- 5) 1988. 9. 20. 정오 유영근(목사)시무하는 개봉동 제일교회에서 피해자 300여명이 모여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회를 하였음.
- 6) 1988. 11. 13.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쪽 노상에서 피해자 500여명이 모여 밤을 지새우며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강력한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당시 평민당 인권위원장 조승형 의원(전 헌법재판관) 이 집회 장소에 와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엄청난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람을 감추지 못하였다.
- 7) 1988. 11. 26. 노대통령시국특별담화를 발표하였음.
- 8) 1988. 12. 3.당시 평민당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의문사 진상보고 대회"를 가졌음.
- 9) 1988. 12. 3. 오자복 전국방부 장관이 응분의보상을결정 하였다면서 삼청교육 피해자 신고를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여 전국 시 도 군 구에 신고자가 부대내 상자 52명 나와서사망한자 395명 장상해자가2776명 행불자 4명도합 3221명이신고하였다.
- 10) 1989. 1. 25. 유영근목사 개인사정으로 공동의장 사임. 정인수 의장, 전영3순 부의장, 김수배 사무총장 등 임원재구성.
- 11) 1989. 2. 27.~1989. 8.까지,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명동성당 등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 촉구집회를 수차 하였음.

- 12) 1989. 9. 10. 고려대학 강당에서 발표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강력히 왜치고 삼청교육대 주모자 전두환외 30여명을 고소하기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서명날인 299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함.
- 13) 1989. 11. 7. 6공 노태우 정부가 담화문 약속을 이행치 않으므로 의원입법을 김현의원의 34인이 발의하여 신청함.
- 14) 1990. 3. 15. 동작구 흑석동 불교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전국유가족 대회를 개최 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강력히추구함.
경과보고 : 전영순. 회장인사 : 정인수. 평민당의원 3명 격려 인사함.
- 15) 1990. 6. 정인수 위원장 개인 사정으로 강원도로 이사하여 위원장 사임함.
- 16) 1990. 10. 17.단체임원 제구성
회장 : 전영순, 부회장 : 김팔만, 박도선. 운영위원 : 김선엽, 윤옥자, 남춘자, 이택승,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모임"으로단체명의변경.
- 17) 1990. 11. 25. 종로천주교회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촉구대회를 개최함.
피해자 참가인원 : 100여명.
- 18) 1992. 10. 29. 제14대국회 이원형의원의 94인이 발의,제출.
"성명서" 민자당은 작성하라 13대 당시 삼청교육대 특별법을 폐기시킨 주범인 것을...
- 19) 1995. 12. 4년 장기계류된 특별안이 제14대국회 또 폐기됨.
- 20) 1996. 11. 5. 제 15대국회 임복진, 권노갑, 박정훈, 천용택, 정동영, 이해찬 의원의 73인이 발의하여 제출 하였음.
- 21) 1995. 다큐멘터리 극장 : 제7화 삼청교육대 촬영함.
1995. 그때 그 사건 : 제46화 독수리작전 (여자삼청교육대촬영)
- 22) 1996. 10. 재차 임원구성을 함. 장소 : 기독교회관(NCC) 인권위원회 사무실(708)에서 50여명 피해자가 모여 임원 선출함.
회장 : 전영순, 공동부회장 : 김기태, 이지영, 김효진, 이연수, 이사및운영위원 : 20여명선출함. 1996. 12. 19. 피해자변택기 대법원판결기각.
- 23) 1997. 1. 20~2. 25까지 거의 매일 국회의원 회관에 국방위원20명과 삼청교육 배상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6명을 방문하여 특별법제정에 협력을 부탁하고 각 정당 정책위의장과 시민단체 인권위원회에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음.
- 27) 1998. 7. 30. 전영순은 대통령 민원실과 국민회의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배상특별법' 제정촉구에 대한 탄원서 제출.
- 28) 1998. 8. 27. 국방부에 임원 전영순 이연수 김용식 김효진 윤옥자 5명이 같이 가서 문의한 결과 "삼청교육대 패해 배상 특별법"안이 보상이 배상으로 바뀌었고 전 정부와는 달리 발의자가 6명 임복진 권오갑 박정훈 이해찬 천용택 정동영 이였다.
- 39) 1998. 9. 8. 기독교 회관 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용현 목사님 상면 친절히 사무실을 같이 쓰도록 협조 하였다. 언론에도 필요시에 보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였음.

- 40) 1998. 9. 11. 전영순 이연수 김효진 경실련 방문 YMCA 방문 협조부탁하였음.
- 41) 1998. 9. 23. 전영순 이지영 김용식 장봉이 윤옥자 5명이 국회에 갔음. 국회의장께 특별법 재정 촉구에 대한 탄원서전영순 이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고 국회 회관에 들려서 국방위원 장영달 김상협 황락주의원을 방문, 삼청교육대피해자배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 42) 1998. 10. 27. 전영순 김기태 정미자 이석범 한나라당 총재께 특별법 재정 협조 탄원서를 전영순 작성하여 제출함. 면담못함.
- 39) 1998. 10. 31. 전영순은 국무총리께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함.
- 40) 1998. 11. 3. 전영순은 참여연대 장운선 기자와 황윤경 작가를 만나 상담하고 참여연대 잡지 12월호50p~51p에 기재되었음.
- 41) 1998. 11. 19. 전영순 이지영 김효진 이택승 이재희 안용남 6명이 장영달 의원을 만날려고 기다렸으나, 못만나고 정동영의원을 만나 부탁하고 돌아왔음.
- 42) 1998. 12. 7. 전영순은 대통령께 국민의정부 제2차 탄원서를 올림.
- 43) 결국 1998년도에도 "삼청교육대 배상특별법"이 장기계류됨.
- 44) 1999. 3. 26. 이연수목사 시무 복지교회에서 임원회의를 하기로 30여명에게 통지 하였으나 전영순 이연수 윤옥자 김선엽 이석범 5명이 모여 다음날 다시 모여 상의 하기로 하였음.
- 45) 1999. 4. 15. 기독교회관 708호에 전영순 이연수 장봉이 이연수 이춘자 윤옥자 백종배 김선엽 8명이 회의를하고 특별법통과 투쟁하기로 의논함.
- 46) 1999. 5. 14. 기독교회관 NCC인권위 사무국장 김용현목사님이 목회하러가고 후임으로 임흥기목사님이 오셔서 부탁하여 다시모여협의하며 조종덕 전공련상임의장이 격려인사를하였음.
- 47) 삼청교육대 임원회의를 하는데 전개협 상임의장 이자현씨가와서 격려의말씀을하였고 1999. 7. 1. 탑골공원에서 집회하기로함.
- 48) 1999. 6. 28. 기독교 회관 임흥기 국장이 프랑카드 2개를 만들어 주었고, 각 언론사에 통보하여 주었음.
- 49) 1999. 7. 1. 탑골공원에서 오후 2시에 집회를 하였음.정개협상임의장 전공련 단체도 참석, 전영순 회장인사 성명서낭독. 이자현 격려인사 구호외침, 한겨레신문 기자 대담함.
- 50) 1999. 7. 5.~1999. 7. 16까지 KBS2TV 권혁만PD가 촬영하였음.
- 51) 1999. 7. 19. "삼청교육대피해자배상특별법"을 재정하기위해 100만 서명 운동을 하기로 협의 하였음.
- 52) 1999. 7. 22. 오후 9시 20분 KBS2 TV 추적 60분에 "국회, 정치는 있어도 입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상영하였음.
- 53) 1999. 7. 24. 5공 강압통치로 인한 권력형비리"삼청교육대피해배상특별법"안을 10년동안 지연시킨 국회는 즉각 재정하고 현정부는 즉시 시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영등포역에서 1차 전영순 이석범 2명이 서명을 받았음.

- 54) 1999. 7. 26. 전영순 각 시민단체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기독교 협의 회 등에 서명용지를 주고 부탁함.
 - 55) 1999. 7월~10월까지 7800명 서명 받았음.
 - 56) 1999. 8. 12. 정개협 상임의장 이자현(삼인련 고문으로 추대)씨가 종각 정 개협 사무실을 같이 쓰기로 허락함.
 - 57) 1999. 8. 26. 전두환 전대통령집 부근 놀이터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언론기 자들도 많이왔고 경찰차도 많이 왔음.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제신 문등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음.
 - 58) 1999. 8. 28. 전영순 등은 명동성당앞에서 포장을 치고 계속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 59) 1999. 9. 8. 자료집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를 발간하였음.
 - 60) 1999. 9. 28.1개월 동안 전영순 이강순 박춘화 3명이 주로 하였고 이택승 씨도 간혹 도왔고, 김기태 정미자도 수차 도왔음.
 - 61) 1999. 9. 29. 그동안받은 서명(4000명)을 국회에1차제출하였음.
 - 62) 1999. 10. 1. 국회앞 한나라 당 앞에1개월동안 하기로 집회허가를받았음. 프랑카드를 국회앞, 한나라당앞, 국민은행옆 3개를 계속 쳐 놓았음.
 - 63) 1999. 10. 8. 국회의원 297명 전원에게 특별법심의 요청서를 우송하였음.
 - 64) 1999. 10. 9. 정개협 사무실에 간판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을 붙여 달 았다.
 - 65) 1999. 10. 18. 정개협 이자현의장과 전공련이 협력하여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성명서"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 정하라"를 발표 하였음"
 - 66) 1999. 10. 22. 전영순은 "삼청교육대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성명서를 500부 만들어 김기태, 신원수,공동의장등 3명이 국회의원회관에 의원님 전원에게 전달하였음.
 - 67) 1999. 10. 23. 서명날인 제2차 3800명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68) 1999. 11. 13.~1999. 12. 6. 국회담당인 국방위원회가 소위원회 를 열때까 지 거의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의원 278명에게 성명서 전달과 특별법 심의 촉구를 하였다.
 - 69) 1999. 12. 7. 전영순은 아침9시경 국회국방위원회에 소위결과를 문의하니 결렬되어 15대국회 또 폐기된다고 하였다.
 - 70) 1999. 12. 8. 전영순 조대현 길상근 정미자 이재희 5명이국방부에 가서 담 당 한병필에게 소위심의 결렬이유를 물으니 담당 한병필씨는 모른다며 얼 마부렸다. 국회 국방위 담당도 공개할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 71) 2000. 2. 26. 12시. 임원회의 정개협 종각 사무실에서 "삼인련"2000.도 사업 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하였다. 참석인원 20명, 규약을 통과하고 임원선출을 하였다.
- 상임고문 : 이자현 정개협의장을 추대, 회장 : 전영순 부회장 : 김용식 김기 태 최순덕 이사와 운영위원 다수를 선출함.

- 전영순은 회장인사겸 5공청산을 위해 통합법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반듯 이 "삼청교육대 피해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의 타당성을 피력하였음.
- 72) 2000. 3. 10.~3. 20. 10일간 전영순은 매일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 구 하였다. 불상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모습이 떠올라 울며 간구하였다. 주님! 이들의 명예회복이 되고 피해배상을 받아 살도록 해 주소서!
 - 73) 2000. 4. 3. 전영순은 각 정당총재와 국방부장관께 1차 공개 질의를 하였다.
 - 74) 2000. 4. 27~4. 29.까지 전영순은 밤잠을 설치며 비영리단체 등록 서류를 만들어 법무부에 신청 하였다.
 - 75) 2000. 5. 30.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으로 인권단체로서 법무부등록1호 로 등록이되어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 76) 2000. 6. 19. 전영순은 임원몇사람과협의하여 매주목요일마다 국방부맞은 편 전쟁기념관앞에서 집회하기로신고경찰에함. 프랑카드"오자복전국방부 장관의 결정을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즉각시행하라!!"
 - 77) 2000. 7. 26.사무실을 1년만에 종각 정개협 사무실에서 종로5가 기독교회 관 708호로 옮겼다.
 - 78) 2000. 7. 29. 전영순회장은 회원들에게 피해사례를 써오도록 부탁하고 실 행하여 준비 하였다.
 - 79) 2000. 8. 18.자료 "호소문"을 제목"우리는 80년 8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를 3000장을 제작하여 인쇄 하였다.
 - 80) 2000. 8. 19.~8. 26까지 전영순회장은 회원 1. 2명과 각등지로 다니며 호 소문을 배부하고 국회회관에 의원 273명 전원에게 우송하고 각 정당대표 와 요로에 우
 - 81) 2000. 10 .6. 제 9회 신문고 행사를 하였다. 점점 인원이 축소되고 모두들 힘이 빠져 있었다.
 - 82) 2001. 1. 28.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등에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원회"에서 삼청교육대 부대내사망자 54명 진상을 밝혀 의문사 인지 조사 한다고 보도 하였다.
 - 83) 2001. 1. 29. 전영순회장은 양승규 의문사 위원장을 면담하여 조사잘해주 시기를 부탁하니 위원장은 민주화라야 된다고 말 하였음.
 - 84) 2001. 2. 20. 전영순 박춘화 강화자 조태현 4명을 MBC방송국에서 전영순 자택에와서 피해사례 증언을 촬영해갔음.
 - 85) 2001. 2. 22. 전영순은 피해사례를 모아서 "피해자 증언집"을 발간함. 이자 현 고문이 편집 하였음.
 - 86) 2001. 4. 3. 2001도 첫 임원회의를 회의록하고 피해자증언집을 한권씩 주 었음. 전영순회장은 2001년도 단체 주된 사업은 1) 신문고행사, 2)백서발 간, 3)특별법 법통과를 위한토론회 개최를알리니 모두 동의하였음. 참석인 원 20명.
 - 87) 2001. 4. 20. 전영순 박춘화 2명이 국회회관 276명에게 배부하였음.
 - 88) 2001. 5. 25. 2001. 3월에 신청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 89) 2001. 5. 28. 자료 전단지 "삼청학살 버림받을수 없다"를 20000장 인쇄하였다.
- 90) 2001. 5. 30. 2001. 6. 8.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신문고행사와 집회를 서울역광장 국방부맞은편 국회앞 청화대앞 등에 하기로하고 개최하였다. 전단홍보 5명이 하였음.
- 91) 2001. 6. 19."성명서"6공 정부가 보상 결정후 신고받아 방치해둔 삼청교육대 피해사상자 3221명의 명예회복을 현정부는 즉각처리 하라!!"
- 92) 2001. 8. 27 전영순회장은 피해자 68명의 자필서명을 연명으로 받아 입법청원을 작성 한화갑 의원외 여 야 의원 12명의 소개의원 서명을 연명으로 받아 국회제출하여 국방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93) 백서발간 자료를만들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 가서 삼청교육에대한 국회청문회 당시자료로 수장된 목록을복사하여 왔음.
- 94) 2001년 9월 28일 "삼청교육대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 토론회를 하였음.
- 95) 2001년 12월 27일 "삼청교육대백서(상)출판기념회"를 하였음.
- 96) 2002년 2월 21일 국회 맞은편 대림빌딩 앞에서 집회하였음. 성명서"정부는 생활 안정자금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국회는 즉각 특별법을 제정하라!!"
- 97) 2002년 3월 8일 인권운동 사랑방, 수지김,박영두형,모두 명동성당 뒤에서 "반인륜범죄인 공소시효 배제"기자회견함.
- 98) 2002년 3월 20일 청화대, 법무부,고충위원회 생활안정자금지원 요청 진정서를 제출 하였음.
- 99) 2002년 3월~4월 매주 금요일마다 반인륜범죄공소시효배제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음.
- 100) 2002년 5월 13일 임원회의를 하고 2002년도 사업에 대한 기획 회의를 하였음. 전단"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진상을 밝혀라!!를 인쇄하여 5월~6월 홍보함.
- 1002) 2002년 5월 27일~30일까지 혜화역앞에서 집회를 하였음.
- 1003) 2002년 7월 4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였음. 법대교수 2명, 변호사1명, 시민단체 대표2명, 도합 6명임.
- 1004) 7월26일 국회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하였음. 전단"국회는 13대, 14대, 15대 국회장기 계류시키다가 폐기시킨 삼청교육 특별법안을 즉각 제정하라!!"를 인쇄 하여 7월~8월간 배부 하였음.
- 1005) 삼청교육대백서(하) 발간을 위한 준비를 적극 하고있음.

결 의 문

1. 우리는 지난 13대, 14대, 15대 국회에서 "삼청교육대 명예회복 및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 일보직전에 폐기된 사건을 중시한다. 이에 자동 폐기를 유도하고도 현 제 16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 당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권유린을 방조한 책임을 묻고져 한다.
2. 우리는 현재의 국민의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면 1992년 대선 당시 야당시절 만민 앞에 공약한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공약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정치인들이 계획적으로 국민을 인권유린, 학살된 사건으로 규정하여 국제사법재판부에 회부하고, 세계인권단체에 그 죄상을 고발 할 것이다.
3. 우리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5공화국 뿌리를 같이하였음을 제삼상기 한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지위와 책임을 통감하여 특별법제정을 즉각이행하라.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공 당시 범법을 주도하고도 한나라당에 잔류하고 있는 범법자들을 형사고발하고 한나라당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우리 삼인련 회원 일동은 대동 단결하고 위의 사업을 완수하여 우리의 숙원인 삼청교육대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권국가를 만들어 삼청교육 같은 인권유린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국가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2002년 9월 30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회원일동

목 차

진행 순서 13

주제발표 및 토론

제 I 주제발표 15

강 경 선 교수(방송통신대 법학)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법 17

토론자: 이 재 승 교수(국민대 법학) 20

토론자: 한 상 희 교수(건국대 법학) 22

제 II 주제발표자 23

이 철 호 교수(여수 한영대학 경찰행정학, 법학박사)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과 과거청산 25

토론자: 이 자 현 의장(정신개혁 시민협의회 상임의장) 37

토론자: 정 태 상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내일) 38

토론사회자: 황 필 규 목사(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부장)

진행 순서

< I 부 >

사회: 우 승 일
(삼인련 공동회장)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개 회 사 전 영 순 회 장

격 려 사 김충조 국회의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부위원장)

축 전 김근태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최고의원)

삼 인 련 연 혁 유영덕 공동의장

결 의 문 김해영 공동의장

< II 부 >

사회: 황 필 규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장)

제1 주제 발표 강 경 선 법학과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토 론 자 이 재 승 법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토 론 자 한 상 희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제2 주제 발표 이 철 호 경찰행정학 교수
(여수 한영대학 박사)

토 론 자 이 자 현 의 장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의장)

토 론 자 정 태 상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내일)

종 합 토 론 참 석 자 일 동

제 I 주제 발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권리 회복

▶ 강 경 선 교수 (방송통신대 법학)

토론 : 이 재 승 교수 (국민대 법학)

토론 : 한 상 희 교수 (건국대 법학)

정규 교육과정의 취지가 벗어났던 것은 아니지만 무정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야. 정규교육의 취지를 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상이 거부당한 상황.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일반> <재정 책구의 공정성>

제 I 주제 발표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배상법

강 경 선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삼청교육의 불법성

삼청교육이 불법적인 것임은 금년도 7월 31일에 있었던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의 판결문에 의해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먼저 판결문은 삼청교육이 "1980년 8월 4일 당시 비상계엄하의 위헌적 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서 시행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위헌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헌법과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특별법]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이 5공화국의 정권찬탈과정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5공 쿠데타다. 일종의 정변. 정부는 선을 지켜라. 특별법 제정 문제 해결하라.

2.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의 범위

위 판결문은 삼청교육 피해자와 그 유족이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 (1) '삼청교육계획'이 위에서 말한 위헌적 기구인 국보위가 수립하였고, 이 위원회 주도 하에 삼청계획 제5호에 따라 삼청교육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 (2) 삼청교육이 내무부(경찰), 검찰, 국방부(헌병, 군부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 (3) 이 과정에서 가혹한 육체적 훈련과 정신교육, 근로봉사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강제 노역에의 종사, 수시로 행해진 구타와 기합 등의 가혹행위에 의해 교육대상자들이 상해나 후유증,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4) 1988년 11월 26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과오를 청산함과 동시에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 중의 일환으로서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것과 그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그 피해를 보상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국관련특별담화'가 발표된 사실이다.
- (5) 국방부장관은 1988년 12월 3일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정부가 삼청교육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하면서,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 본인이나 유가족 또는 관련인은 같은 달 12일부터 1989년 1월 20일까지 해당 시, 구, 군청 민원실로 신고하여 달라고 공고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다.
- (6)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피해자들은 위 신고 기간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서인 각 관할구청에 피해신고를 하였으며, 각 관할 경찰서에서 삼청교육 입소여부, 그로 인한 피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까지 받았으나,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7) 이상과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위는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과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인 피고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 (8) 이런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하였다(2001년 7월 10일 선고).
- (9) 이런 전후과정에서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입법추진활동을 남긴 바 있다. 즉, 1989. 11. 7. [1980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현 외34명 발의, 국방위원회에 회부. 1992년 5. 29. 제13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됨)
1992. 10. 19 [삼청교육피해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원형 외 94명 발의, 국방위원회에 회부)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됨(1996. 5. 29)
1995. 11. 3. 같은 이름의 법률안이 제출되고 국방위에 회부되었으나, 법률안을 변경하여
1996. 11. 9. [삼청교육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안](임복진 등 6인 외 73명의 발의, 국방위원회 회부. 2000. 5. 29.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됨.)
- (10) 2001년 8월 27일. 본 단체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에서 회원 68명의 서명을 받은 후 국회의원 한화갑의원 외 12명의 소개의원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하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1년이 넘도록 국방위원들이 거론치 않으므로 2002년 6월 7일 "삼청교육대 배상특별법안"을 일반인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첨부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삼청교육대의 불법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헌법적 근거

삼청교육대사건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 헌법상 가장 중요한 규정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조항과 제10조의 기본권보장조항이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1) 특히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청교육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일련의 만행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선 법적 근거도 없다. 물론 계엄령에 의해 발동된 조치라고 하지만, 이미 제5공화국의 집권과정은 불법적인 쿠데타로 규정된 바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하에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는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불법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삼청교육당시에 저질러진 일체의 공권력행사는 불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보다 구체적인 헌법규정으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배치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삼청교육은 우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반한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행한 일이었다.

(3) 적법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 영장 의한 체포와 구속 등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모든 원칙이 무시된 일이었다.

(4) 헌법적 불법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이며, 특히 형사범에서는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기

도 하다.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두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소급입법을 단행해서 형벌이나 재산권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 법질서의 부당한 훼손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헌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도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5공의 쿠데타와 집권과정에서 벌어진 광주진압과 삼청교육 등의 만행적 사건은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적 행위였다. 따라서 이런 헌법적 불법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4. [민주화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과 [삼청교육피해자배상법(안)]에 대해서

김대중대통령의 정부는 분명 민주정부였다. 그러나 공동정권에 의한 집권이 말해주듯이 김대중정부는 일을 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가급적 축소시켜나가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민주화운동의 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민주정부의 집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개혁조치들이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꼽을 수 있는 것이 [민주화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들의 제정과 해당 위원회의 발족이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많은 일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존속시한을 다한 상태이다. 이런 위원회들의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민주화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과거의 반민주적 행위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가급적 거부하고, 현재의 민주화과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활동에 진척이 없는 것이다. 과거의 비민주적 일에 가담했던 관계자나 현재의 공무원들이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을 때 과거의 일에 대한 진상규명과 바른 평가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보상법]이나, [의문사법]은 보다 더 높은 민주화수준을 위한 이 시대의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옳다. 그런데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법]은 모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법의 성격을 띤다. 그것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삼는 해석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의 적극적 민주화운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내야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일반을 구제하는 것이 현재의 민주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자세라고 본다. 과거의 군사독재기간 중에는 그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결연히 항쟁한 사람들도 많았다. 반면, 명분도 잃고, 변변한 주장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이 과업은 바로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인권보호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전야에 살고 있다. 연방제든, 국가연합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남북이 화해의 길을 찾아 통일국가로 사는 그 길에 들어서 있다. 통일은 새정부의 수립이요, 새시대의 개막이다. 그렇다면 통일의 길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상처를 씻는 일이다. 특히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잘못된 행위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통일시대를 담당할 새로운 정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시바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한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값있게 평가해주도록 해야 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문제

이 재 승
(국민대학교 법학 교수)

1. 보통사람들의 책임

삼청교육의 불법성은 이미 강경선 교수의 발제에서 충분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엉뚱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청교육 그리고 그 희생자들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 모두에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중적인 인권감각의 문제입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내린 전교조나 동의대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진향공작과 관련한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얼마나 격심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까. 사실 위원회의 결정 하나하나를 21세기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삼청교육 피해자의 인권문제가 가장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적 감각은 삼청교육훈련은 아마도 전두환정부가 한 것 중에서 비교적 잘한 일이라고 기만당하고 있지 않을까입니다. 그것은 오랜 동안 여론조작의 산물이자 자기기만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삼청교육의 희생자들은 바로 보통사람들의 의식 속에 게토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청교육희생자들과 관련한 인권운동은 이러한 의식을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삼청교육과 무관한 보통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삼청교육의 희생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청교육의 희생자들은 80년대에 일어난 굵직굵직한 인권침해사건들은 대체로 해결되고 있는데 유독 삼청교육의 희생자들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저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이 삼청교육희생자의 희생과정에서 누리는 심리적 잉여가치를 깨뜨릴 때에만 희생자들의 처지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용어상으로는 매우 피하고 싶으나 "집단책임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삼청교육이라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협의의 범죄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권범죄를 일삼은 권력집단에 저항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청교육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반대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대체로 후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선진적 인권의식에 합당한 집단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러한 생각을 더욱 분명히 갖게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가해자의 책임에 몰타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중의 태도를 분명하게 건드려야한다고 봅니다.

2. 유공자와 피해자

최근에 제정된 과거청산에 관한 몇 가지 법—특히 민주화보상법—들, 그리고 이러한 법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정신에 대하여 몇 가지 유감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법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민주주의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과 희생자들은 이 법 바깥에 있습니다. 삼청

교육의 희생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두 씨 사건은 거의 유일한 예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청산에 관련된 법들은 주로 긍정적인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전개된 과거청산작업은 본질적으로 부실하고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청산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누가 인권을 침해당했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들은 대체로 누가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는가라는 도덕적 공훈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바로 범죄자집단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자들은 원래 정의로운데, 국가를 더 정의롭게 하려는 시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식입니다. 국가권력 대 민주화운동의 관계가 '부정 대 정'이 아니라 '정 대 정'의 관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은 국가가 바로 범죄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주화보상법은 삼청교육의 희생자들에게는 차단장치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원칙상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점만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법들은 바로 이 근본적인 법원칙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에 대한 포상(褒賞)이 아니라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賠償)이 필요한 것입니다.

3. 무책임이 범죄다.

삼청교육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인권범죄, 국가범죄로 불립니다. 그것은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의 국제인권법의 주요한 흐름이고,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올해 설치되는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민주화를 체험한 나라에서는 과거인권범죄는 시효와 상관없이 처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시효를 마치 하느님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 사법살인을 무효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법원으로부터 과거청산에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용기있는 판사가 있다해도 상급심에서 다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배상위원회를 통하여 배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자처벌의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쿠데타과정에서 국보위, 입법회의, 사회정화위원회에 관여한 헌정파괴적인 부회뇌동자들의 인명색인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것, 즉 불처벌(Impunity)은 원래의 범죄와 함께 또하나의 새로운 범죄이며, 불처벌은 인권범죄자의 범죄가 아니라 이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다수의 범죄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겠습니까. 국제인권법은 무책임이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과거청산국면을 시작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단추가 삼청교육희생자로 알려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말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2세대의 인권교육을 위해서도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교육피해자에 대한 배상법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 교수)

이렇게 부족한 자료가. 불참이. 부정이 존재한다. 강심하면

제 II 주제 발표

삼천교육 피해자의 현안문제를 위한 대안과 5공청산

▶ 이 철 호 교수 (여수 한영대학 경찰행정학 법학박사)

토론 : 이 자 현 상임의장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토론 : 정 태 상 변호사 (공정인가, 법무법인내일)

3대 인권 유린

- 80년 양곡 배급 축소
- 80년 공무원 개혁
- 삼청교육대 인권

→ 유류 문제만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피해자들의 힘이 없기 때문. 힘이 없다면 어떻게 방치되어 왔는지. 피해자들, 각종적인 여형사각집 해야! 여형을 도파를 취리뒤 하나도 없습니다. 여형사각의 각법 서지가 합니다. 강제로 여형 종료.

제 II 주제 발표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과 과거청산

이 철 호

(여수 한영대학 경찰행정학 법학박사)

<<목 차>>

- I. 머리말
- II. 과거청산의 시작과 끝, 그리고 미완(未完)
 1. 5공 청산의 주소
 2. '5공 과거청산'으로서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을 위한 경위
- III.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주범의 원주소
 1. 1988년 백담사행 직후 대국민성명
 2. 12·12, 5·18재판 후 불평등한 법집행의 실상
 3. 진정한 참회는 있었는가? 참회(懺悔)없는 용서는 또 다른 죄악이다.
- IV. 삼청교육대 관련 판결
- V. 삼청교육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② 81년 6.22
전경배 사건
권사하는 과정까지
여형사각가 정부에
주요했다
③ 선공의 각종 과정까지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국가권력
의 군사 행정체계
④ 피해자에 대한
영대 회복과 배상책
구
정부는 여러 불법행
성 인정하고 있는데
대 내적 잘못
특별법 제정 문제
영위. 그것을 위해
선공의 보좌역
정도로 두광해야
명확한 영경로
정정된 것
노년만
"보르를 거행하는
정도로 경찰들
장구기 못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내야야
복기들정도 하해 위해 물주과인 하등에 거행자들이
25 권리/사적. 권법규명 없으면 그것도 또 벌리.

I. 머리말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회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제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2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9,786명이 25개 군 부대로 분산 수용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졌다. 삼청교육이 보여준 잔혹한

*여수 「한영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1) 戒嚴布告 제13호(1980. 8. 4) 不良輩 일제 검거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고의 安寧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고질적인 각종 불량배를 일제히 檢舉, 순화함으로써 밝고 正義로운 社會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대상자 ㉠ 폭력사범(강도·절도·치기배 포함) ㉡ 恐嚇및 詐欺事犯(서민 착취배 포함) ㉢ 社會風土 문란사범(밀수·마약·상습도박 포함). 2. 檢舉된 불량배는 일전 기준에 따라 분류 收容, 醇化措置한다. 3.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 4. 대상자는 자수하여야 하며, 자수시에는 최대한 관용한다. 5. 대상자의 비행을 알거나 피해르 입은 자는 신고하기 바라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한다. 6. 일전기간 수용, 순화된 자의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위 布告 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 한 자는 兇狀없이 체포·구금·수색하고 엄중처단한다."

"특별법 제정 위해
여형사각집 해야"

인권유린의 실상을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980년 당시 문교부는 각급 학교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선도가 불가능한 학생을 차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숫자는 각 학교별로 할당이 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학교에는 상당한 압력과 불이익이 가해진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삼청교육대”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삼청교육대특별법’을 제정 해야하는 되는 이유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인을 추적하여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서 삼청교육과 관련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의 진상을 밝혀 과거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는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서와 같은 불행한 민주 헌정 질서가 짓밟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관련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배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삼청교육대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작업으로서 (1) 삼청교육대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해결과정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삼청교육대문제 청산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2)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주범의 현주소도 살펴본다. (3) 그 동안 삼청교육대 문제와 관련한 판결의 동향을 조망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검토하기로 한다. 끝으로 1980년대 한국사회 최대의 잔혹한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20여 년이 지나도록 명예회복 등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구제방안 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II. 과거청산의 시작과 끝, 그리고 미완(未完)

1. 5공 청산의 주소

과거청산으로서 5공 청산은 크게 (1)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2) 80년 해직자 문제, (3)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 문제가 거론되었다.

2) 삼청교육의 야만성은 14살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화방송이 2002년 4월 7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정화작전, 삼청계획 5호>의 진실]이라는 제목아래 기획취재 방영한 바에 의하면, 삼청교육 대상에는 고등학생도 대거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학생들의 검거에는 심지어 수업중인 교실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두 번씩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끝내 퇴학처분된 학생까지 있었다. 삼청교육을 받은 학생은 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980명, 그러나 실재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으며, 취재과정에서 15세 미만의 중학생도 다수 삼청교육 대상이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http://script.imbc.com/tv/cucnt/cucnt200/preview0055.html>).

3) 삼청교육 입안에 대해서, 1988년 국회 5공 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김만기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입안을 한 것으로 주장했으며, 허삼수 정화분과 위원은 통치권의 일환으로 순수한 민생치안의 차원에서 기획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문화방송의 <정화작전, 삼청계획 5호>의 진실> 제작 취재를 통해 삼청계획안이 정화위원회가 아닌 상부에서 떨어졌으며, 정화위원회 내부에서 군출신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당시 정화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한 인사로부터 나왔다. 이는 그 동안 삼청계획이 국보위 정화분과위원회에서 기호기, 입안됐다는 주장을 뒤엎은 것이다. (<http://script.imbc.com/tv/cucnt/cucnt200/preview0055.html>).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는 5공화국 아래서 일부 희생된 시민에 대하여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6공화국 하에서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이 지급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었다. 또한, 광주 망월동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기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80년 공무원 해직자 문제는 1989년 3월 29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5공 청산의 일환으로써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980년 공무원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의 단초를 찾아 마무리되고 있으나, 김대중정부에 와서도 삼청교육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 김대중정부에 와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박정희 정권 말기의 유신체제나 전두환·노태우 정권 등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자행된 인권탄압과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고난과 희생을 당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누명을 벗고 민주 유공자로 땀땀이 명예회복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보상을 받도록하는 등 군사독재정권하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의 과거청산작업을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사건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제외되고 말았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27사단 난동사건’에 연루되어 청송 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하다가 사망한 박영두 사건을 들 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 재소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각 기관에 이를 진정하였다. 여러 차례 이 사건이 각 기관에 진정되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단 한번도 핵심적인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박영두와 함께 끌려가 폭행 당했던 동료 재소자를 불러 조사해보지 않았다.” 그러다, 2002년 7월 26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57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의 정책 입안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2. ‘5공 과거청산’으로서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을 위한 경위

1) 各黨제출 5共非理 조사대상 목록의 4당 공통의 「三淸교육대」

1988년 각 당이 제출한 5공비리 조사대상 목록에도 4당(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공통으로 「三淸교육대」문제를 들고 있다.

“1980년 38,000여명을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권력남용, 일선기관에서의 시행과정상 잡음 및 감독 소홀로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가혹행위, 인권유린 물의 야기”를 들어 5공 비리 조사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2) 노태우 정부의 과거청산 및 보상 약속

비자금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전직대통령인 노태우씨는 1988년 11월 26일 「시국관련 특별담화」에서 “.....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면과 함께 光州민주화운동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실확인 작업과 國會 특위활동

4) 박영두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영두 사건 결정문” 참조.

www.truthfinder.go.kr/repo/decision.php?f_act=view&f_afid=82.

5) 동아일보, 2002년 7월 30일 참조.

이 끝나는 즉시 명예회복과 최대한의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명간 보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소위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입니다.**(필자 강조) …….”⁶⁾

3) 오자복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공고

위의 특별담화에 근거하여 1988년 12월 3일 오자복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사상자 신고기간 설정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과 함께 삼청교육 관련 사망자 또는 부상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오자복 국방부장관은 이 담화문에서 "정부는 먼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특히 불의의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삼청교육은 비록 8년 전 한 시대를 가름하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치러진 불행한 사건이라 하겠으나 그로 인한 상흔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불신의 벽으로 국민 대화합에 장애가 된다면 이 또한 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심려도 바로 이 점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불행했던 과거를 조기에 청산하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민주화합의 역사적 대장정에 온 국민 모두가 동참토록 한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필자 강조) 따라서 관련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이해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삼청교육의 후유증을 치유할 최선의 방안에 관하여 기탄 없는 충고와 조언을 주시면 이를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1988년 12월 3일 오자복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고〉

삼청교육 관련 사망자 또는 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삼청교육 관련 사망자 및 부상자
2. 신고기간 : 88년 12월 12일 ~ 89년 1월 20일 (40일간)
3. 신고장소 : 시·구·군청 민원실
4. 신고자 : 본인, 유가족 또는 관련인
5. 구비서류 : ◇사망자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통
◇부상자 또는 장애자 : 주민등록등본, 상해진단서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통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사과로 문의바랍니다.

1988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오 자 복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국방부장관의 담화와 공고에 따라 신고기간에 3,221명이 신고하였다. 1989년 1월 25일 국방부차관은 국회보고에서 (삼청교육피해자구제에 관한)

6) 중앙일보, 1988년 11월 26일, 4면 참조.

특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7월 보상신청을 받아 1989년 9월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정부에 의한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 13·14·15대 국회에 십여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피해자배상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제출법안은 입법화되지 않고 자동폐기되었다. 16대 국회에서도 2001년 8월 27일 입법청원한 민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삼청교육대 문제에 대하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논리만을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III.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주범의 현주소

1. 1988년 백담사행 직후 대국민성명

전두환씨는 1988년 11월 23일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기 전 연희동 자택에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뜻에서’라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서에서 연희동 사재와 남은 자금 139억원을 헌납하겠다고 밝혔다.⁸⁾

"제가족의 재산은 연희동집 안채(대지3백85평 건평 1백16.9평)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대지94평, 건평 78평)서초동의 땅 2백평 그 밖에 용평에 콘도(34평) 하나와 골프회원권 2건 등이며 금융자산은 재산등록제도가 처음 실시된 83년 총무처에 등록한 19억여원과 그 증식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23억여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축재했다고 단죄를 받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자 강조)"⁹⁾

이후 전두환은 연희동 사재와 139억원을 국가에 헌납했는가? 정부는 전두환씨의 대국민성명 이후 국가헌납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삼청교육 인권유린의 주범인 전두환씨는 백담사에서 돌아온 이후 줄 곳(서울구치소 및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된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도 국가에 헌납하겠노라고 했던 대저택에서 살고 있다.

2. 「12·12, 5·18재판」 후 불평등한 법집행의 실상

(1) 추징금 미납실태

7)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씨가 19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뒤인 19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해봤으나 1993년 4월 법원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재정신청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93초 12 재정신청). 2001년 10월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 등 피해자들이 "출소할 때 발급된 수료증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중이고 공소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 삼청교육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2년 3월 13일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없이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8) 139억은 6공과 5공이 사전에 조절한 액수로서 완벽하게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

9) 동아일보, 1988년 11월 23일, 4면 참조.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추징금 2,205억 중 14%인 313억원을 냈을 뿐이다. 현 정부는 전·노 전직 대통령을 1998년 집권 후 사면 복권시키고 전직 국가원수 자격으로 대통령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예우를 하고 있다.

현 김대중정부 하에서 정략적인 고려를 감춘 채 전직 대통령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앞세워 이들에게 국가원로로서 융성한 대접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인 집단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국가 원로 예우는 실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나아가 사면과 복권 뒤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면서 또 부과된 추징금도 재주껏 찾아보라는 듯이 여유 있게 버티고 있는 전두환의 행적은 역사와 정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했다.¹⁰⁾

전·노 그들이 전직 국가원수 자격으로 대통령 초청 만찬장에서 미소지으며 포도잔을 들이키며 閑談(?)으로 노닥거릴 때, 1980년 삼청교육대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은 쓰디 쓴 미소를 머금고 병상에서, 또는 사회의 차디찬 시선과 심지어는 가족들의 매몰찬 시선에 고개 숙이며 죄인 아닌 죄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죄인 아닌 죄인들은 고개 숙이며 생활하는데, 진짜 죄인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납세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은 평평거리며 생활하고 있다.

법치주의 나라에서는 법을 어기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전두환은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로 결정된 추징금에 대하여 "한 푼도 없어 못내줬으니 찾으시면 가져가라"고 버티고,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린 채¹¹⁾ 추징금도 내지 않는 범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명예를 들먹이고 있다.¹²⁾

"전·노씨가 김용갑 의원의 주장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 중략 -- 전직 국가원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원하는 바다.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협조하면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일이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소환을 거부하면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린 채 추징금도 내지 않는 범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한겨레신문, 2002년 9월 4일, 4면 사설 참조).

(2) 해외여행

정부의 법집행은 더욱 더 가관이다.

법무부 업무처리 규칙에는 추징금 미납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출국금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도 1,000만원의 추징금만 있어도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10) 이병천·조현연 編, 『20세기 한국의 야만』, 일빛(2001), 31면.

11) 전씨에 대한 추징금 징수가 이퍼렘 부진한 것은 그의 비자금에 대부분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도 현재 남아있는 재산도 감정이 9억여원 상당의 연회동 자택중 자신 명의로 된 별채뿐이기 때문이다.

12) 한겨레신문, 2002년 9월 4일, 4면 사설 참조.

1,89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는 2000년 2월 14일~2000년 3월 10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하기까지 측근 20명을 대동하고 26일간 캄보디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을 다녀왔다. 어찌된 일인가? 1천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해외여행이 자유롭다.

이에 대해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자금 재판 이후 출금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출국금지대상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측에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이 출금을 요청하면 규칙에 따라 조치하는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전 전대통령에 대한 출금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출금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 제1항)는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무부가 말이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퇴임 후에는 평범한 시민에 불과할 따름이다. 하물며 그들은 죄인·범죄자이다. 특별사면(赦免)되었지만, 특별사면의 법률적 효과는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사면법 제5조 참조)는 것 이상은 아니다. 그는 전직대통령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法律'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¹³⁾

미납된 추징금을 받아내지 않는 정부도 문제이고, '돈이 없어 못 갚는다'는 그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3) 외교관 여권 발급

전두환씨는 1999년 2월 일본방문 때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인사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것은 또 무엇인가?¹⁴⁾

(4) 법에도 없는 예우

전직 대통령들에 '교통예우'가 지나치다. 밥먹고 이발소 가는데도 교통신호를 조작하여 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일반시민들에게 극도로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외출할 때마다 쉽고,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도로의 교통신호기를 파란불로 바꾸거나 차량을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조작하고 있다고 한다.¹⁵⁾ 이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것이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들에 대하여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3항 2호).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에 대하여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호). 전직대통령들이 행차

13)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이 ①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② 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처분을 회피한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동법 제7조 제2항).

14) 1999년 9월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신범 의원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전씨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한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효기간 2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 재량으로 발급했다"고 밝혔다.(한국일보, 1999년 9월 30일 참조)

15) 경향신문, 2002년 9-8월 15일, 19면

(?)한다고 교통신호를 조작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들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서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동법 제7조 2항).

4. 진정한 참회는 있었는가? 참회(懺悔)없는 용서(容恕)는 또 다른 죄악이다.

(1) 5·18재판과정에서 전두환씨는 "재판과정에서(전씨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다. '무장을 하고 저항한 폭도와의 교전과정에서 상호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 외에 공수부대에 의한 민간인 무차별 살상은 당시 아무런 보고가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지난번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다."¹⁶⁾ 그 당시 전두환씨가 어떤 직책과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자. 그 당시 전두환씨가 정말로 공수부대의 민간인 무차별 살상을 몰랐을까?

(2)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는 '12.12, 5.18 재판' 이후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경제난 극복에 일조 하겠다"며 자신들의 「헌정파괴행위」에 대해 정말로 뉘우치는 구석을 찾을 수 없었다.

(3) 특별사면(特別赦免)으로 석방되어 나오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온근히 자신의 경제적 치적(?)을 자랑하고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어, 출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은 교도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농담을 던지며 「양심수(良心囚)」나 「개선장군」인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조계사 법회(음력 12월 초하루 법회, 1997년 12월 30일)에 참석하여 대중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죄나 언급도 하지 않고, 자신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이고 자신을 교도소에 보낸 사람은 「나를 해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전두환씨의 행태에서 진정한 참회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전두환씨는 자신이 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는 것일까?¹⁷⁾

(4) 1999년 전두환씨의 어지러운 행적을 보노라면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흐트러진 발걸음으로 못 사람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서산대사의 경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고 역사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사람이 다시 나대는 모습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자아낸다.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으니 그 동안 수양했다는 '백담사'를 욕보이는 꼴이다. 그전 전씨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지역화합"이라니, 말이야 백번 옳지만 과연 그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 옳다고 해서 아무나 그 말을 해서는 안된다. 말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중략..... 외환위기를 불러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또다시 지역 영향력 복원을 꾀하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주막 강아지'로 몰아친 것도 전씨로서는 속 시원한 복수요, 집권여당으로서는 내심 반가운 일일지 모른다. 여권 일부에서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며 온근히 즐기는 모양이나 그것은 소인배들이 할 짓이다.

.....중략..... 전두환·노태우씨가 출옥할 때, "전·노씨가 비록 쇠창살에서 벗어났으나 우리는 그들이 '역사의 철창'에서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욱 눈을 부릅떠야 한

16) 한겨레신문, 1997년 9월 3일, 26면 참조.

17) 이철호, "憲法上 赦免權과 전·노赦免 논의에 대한 管見", 「亞·太公法研究」 제4집(1997.12), 129면.

다"고 쓴 기억이 난다.¹⁸⁾

(5) 「녹화사업」 조사 거부 -- 2002년 8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으나 전씨가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전씨측은 대리인을 통하여 "소환 당일에야 녹화사업과 관련된 소환이란 걸 알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전두환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02. 8. 10. 09:30 강제징집, 녹화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 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위임을 받은 변호사 이양우씨의 답변서에 의하면, 의문사 특별법 제4조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넘어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으로 과거정권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국가시책에 대하여 조사평가하려 한다면 이는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귀 위원회의 업무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며, 제5공화국 당시, 시행된 "대학생 징집조치"는 당시, 주무 부처가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안, 시행된 국가시책으로 알고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신하였다.

특히, 이 답변서에서는 녹화사업을 '논화사업'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한상범)을 '한상진'으로 오기(誤記)로 지극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2002년 9월 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¹⁹⁾

노태우씨는 1980년 8월 21일~1981년 1월 24일 기간 동안, 전두환씨에 이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1982년 4월~83년 7월 내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인사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 초반 강제징집된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노태우 前대통령과 이학봉씨에게 2002년 8월 13일 소환장을 보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1980년 9월 4일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유시민 등 전국 각 대학에서 64명의 학생들과 무림 사건(1980. 12.11) 관련자 27명에 대한 강제징집 조치는 계엄합수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한 후, 수사단장 이학봉, 합수부장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2002년 8월 17일 오전 10시와 8월 19일 오전 10시까지 각각 출석을 요구하였다.

2002년 8월 19일 군'녹화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했다. 또한, 2002년 8월 17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받은 이학봉(李鶴捧) 전 보안사 수사단장도 역시 소환에 불응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2차 소환장 발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2002년 9월 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우씨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 집행하려 했으나, 집을 비워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²⁰⁾

IV. 삼청교육대 관련 판결

(1) 앞에서 살펴 본 1988년 1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과 오자복 국방부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망자

18) 이원섭, 칼럼 "오늘 내가 가는 길은...", 한겨레신문, 1999년 5월 12일, 8면.

19) 이철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푸른세상(2002), 151면

20) 이철호, 위의 책, 153면.

대상으로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해 줄 것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였다.

대 인권유린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헌법상 국가원수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로써 사법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²¹⁾며 원고측인 삼청교육대로 인한 인권유린 피해자의 패소로 귀결되었다.

(2) 2001년 7월 11일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삼청교육 피해자인 김아무개씨 등 5명이 낸 소송에서 1980년 삼청교육피해에 대해서는 청구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대통령 담화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인당 1,000만~1,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²²⁾

(3)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 부산지법 민사3단독 판결(2002. 8. 23) —

부산지법 민사3단독 한영표 판사는 2002년 8월 23일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88년 특별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것으로 대통령이 퇴임했다고 해서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지난 1999년 12월 김대중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비롯한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만들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²³⁾

대법원은 '비상제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년 1월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었고 정상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1992.8.14, 92다29811판결; 1992.11.27, 92다8521판결; 1996.10.11, 95다1460판결 등)을 내림으로써 5공화국 아래서 저질러진 인권유린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구제 노력은 원천 봉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국가조직이 관여하거나 다수 범죄자가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해 도저히 구제를 청구할 수 없었던 5공화국하의 강압적 분위기를 완전히 간파한 형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²⁴⁾

과거청산작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독한 인권유린과 참혹한 피해를 당하고도 오랜 세월 동안 숨죽인 생활을 해왔던 희생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지금, 어떠한 법률적 구제조치에도 당장 걸리는 문제가 바로 시효제도라는 것이다. 30여 년에 걸친 독재정권의 연속적인 등장과 유지하는 그 긴 기간 동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조차 전혀 썩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²⁵⁾

21) 대법원 1996. 12. 19,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22)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12일, 15면; 한겨레신문, 2001년 8월 10일, 15면 참조.

23) 부산일보, 2002년 8월 24일 참조.

24)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1998), 190면.

25)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겨레신문사(1996), 33~34면 참조.

과거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형식주의적 법해석을 고수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볼 때, 대량적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무의미함을 알 수 있다.²⁶⁾

V. 삼청교육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1. 삼청교육 피해자 진상조사 및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정신질환, 장애자, 가난, 삼청교육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진상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전 단계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 책임자 처벌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과 같이 군사독재권력 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반인륜적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을 기안하고 은폐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국가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의 반인륜적·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²⁷⁾ '공소시효배제 특별입법'에 따라 1980년 삼청교육을 계획·기안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논리적으로 그 법률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범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돼도 괜찮다는 걸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⁸⁾

3.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배상

1980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삼청교육대」 인권유린사건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비롯하여 사법부·행정부의 관심 밖에 있다.

1988년 노태우정권 때의 배상약속 특별담화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법부는 '시효제도'라는 형식주의적인 법해석으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이다. 고작, 2001년 7월 노태우 정권의 위약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는 삼청교육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80년 신군부의 주도로 실시된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법]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新軍部) 세력들은 국가공권력을 사유물화 해서 축제한 주역

26) 한인섭, 앞의 책 191면

27) 이철호, 앞의 책 190면

28) 음바야, 5·18광주학살 범죄 공소시효, 「월간 藝鄉」 제131권(1995년 8월호) 169면

· 헌정질서를 파괴한 주역들과 그 추종세력이나 주변인물들은 소득 출처가 불분명 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폭력·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희생된 희생자들과 그 가족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민이 피해자도 되고 그 피해에 대한 배상자도 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다고 본다. 국가폭력의 가해책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²⁹⁾ 이제부터라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두환 5공 세력의 재산환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 만행은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에 따른 인권유린사건이다. 5·18광주학살을 통해 국민을 제압한 신군부는 '불량배청소'라는 미명하에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만행을 저질러 정권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선전 집권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위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삼청교육대피해자배상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삼청교육이 5·18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 대부분이 '힘없는 약자'라는 사실이다. 지금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니 이런 법리논쟁을 할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이 문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국민의 여론 조성 및 '삼청교육대피해자배상법' 제정 운동 전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삼청교육대 인권유린사건'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도중 2002년 9월 16일 조사활동시한 종료로 중단·좌초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3월 초 제2기 한상범(韓相範)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의문사 진상규명의 범위를 단순히 죽음이 발생한 직접적 사인규명차원을 넘어 그 죽음을 발생시킨 권위주의적 정권의 명령, 탄압구조, 정책, 법, 관행, 그리고 지금 의문사로 의혹을 불켜 온 죽음이후의 은폐 및 탄압행위 및 시스템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의 위상을 과거청산차원으로 천명하였다.³⁰⁾ 이러한 진상규명 및 과거청산차원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2년 7월 26일 열린 57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의 정책입안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시한종료(2002년 9월 16일)로 삼청교육대의 진실규명이 무산되었다. 삼청교육대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시한 연장 또는 철폐' 및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에도 동참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삼청교육대인권연합이 '삼청교육대피해자배상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여론캠페인('1인 시위' 등)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조성을 통하여 삼청교육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이 이제껏 뒷짐지고 모른 채 한 삼청교육대 인권유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응어리지고 한 맺힌 이야기를 순순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할 리 만무하다.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은 쉽지 않다.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때만이 명예회복과 권리회복은 가능한 것이다.

29) 同旨 한상범 교수, 뉴스메이커, 제489호(2002.9.5), 56면.

30) 이철호, 앞의 책 186면.

제 II 주제 토론①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과 과거청산

이 자 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삼임의장)

~~위키 광둥어 논쟁문장~~

~~사명관 사관도 평가 능동 접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귀찮게 내세우 . 권력이 강한 필요하다.

소소로 부끄러워하려 말라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과 과거청산

정태상
(공증인가, 법무법인 내일)

1. 민사상의 소멸시효와 형사상의 공소시효

현행법상 민사상의 소멸시효와 형사상의 공소시효제도가 엄존하고 있고 1981년 1월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었다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삼청교육대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삼청교육대 문제에 관한 민사상의 재판과 형사상의 고발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시효제도 자체는 정당한 권리관계를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자들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범죄의 영향력이 미약해졌거나(공소시효의 경우)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잠자는 권리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소멸시효의 경우)이 첫째 이유이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증거들이 없어져서 재판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둘째 이유인데 우선 두 번째 이유인 증거의 일실로 재판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건에 따라 상대적일 뿐 아니라 좀더 발전된 과학적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의 시대에는 그 근거가 약화되었고, 첫 번째 이유인 범죄의 영향력이 미약해졌다는 것도 애매한 표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논리이고 민사상의 권리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권리행사 자체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으로서 헌정질서과피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이 있으나 이 법은 내란, 외환, 반란죄,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에 그 적용이 있어 삼청교육대문제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 조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삼청교육대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공소시효문제는 특별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명 수지검 사건을 계기로 하여 결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기대하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의 문제도 결국은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별법에는 공소시효의 배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는 삼청교육대피해자의배상등에관한특별법도 결국은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제해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가 특별법으로
기재하여 미루지 않는 것

2. 진상규명 기관의 문제

삼청교육대 문제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배제와 함께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만 하면 결국 진상규명은 검찰의 손에 맡겨지는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미 1994년 11월경 12·12 군사반란사건에 대하여는 국민적 화합차원이라며 기소유예 하였고, 1995년 7월경에는 5·18 내란사건을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다가 박계동 의원에 의해 노태우 전대통령의 수 천억 비자금 조성사건 폭로와 그에 이어진 5·18 특별법의 입법 등으로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12·12와 5·18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여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현정부 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종길, 김준배, 허원근 사건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만일 검찰이 의문사건을 조사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성과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상규명에 관한 책임은 검찰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삼청교육대진상규명위원회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기대를 하여야 하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삼청교육대의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문사를 규명하기 위한 전제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삼청교육대의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청교육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실시도 필요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료 조사의 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모두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청문회보다는 실질적 조사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함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사건에 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은 1988년경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고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과도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삼청교육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최소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삼청교육피해자의 구제와 과거청산

한 상 희

(건국대 교수, 법학)

1. 과거청산의 법적 의미

과거청산의 문제가 제기되면 흔히들 공소시효를 들면서 그것에 저항한다. 여기서 공소시효는 법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이미 그 문제는 과거사가 되어버렸다는, 기독교상태중시론까지도 포함한다. “다 지난 일을 이제 다시 거론해서 무엇하느냐?”는 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해자측 혹은 묵시적 동조자측의 논리는, 진실은 현실에 복종하여야 하며, 화해는 굴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에서 배운다는 식이 ‘낭만적’ 논의는 삼가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역사의 교훈 운운하는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약이 여전히 새로운 포장을 쓰고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화시켜서 말해보자. 우리는 어제 도둑맞은 재산을 찾기 위하여 오늘 경찰등의 공권력에 호소한다. 경찰은 혐의자를 체포하여 작년의 범죄를 추궁한다. 같은 의미로 20년 전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며,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현재의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부정의가 정의에 의하여 교정되지 않고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가 부정의이며,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것이 법질서의 핵심구조이다. 환언하자면,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과거의 청산을 법의 영역 밖으로 빼돌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현행법의 이념과 소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자체 불법과 위법의 행동인 것이다.

2. 법외곡의 현실 - 헌법재판소 1996. 6. 13선고 93헌마276

발제에서 언급한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의 판결은 이러한 당대의 정의관념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헌법적 이념을 구체화하여야 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는 입법을 국회가 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각하하였다.

첫째, 비록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 상당한 특수성이 있어서 국회가 이에 대한 특별입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국가배상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배상조치를 하겠다는 1988.12.3 국방부장관의 담화만으로는 국가에게 청구인 등 삼청교육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권을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셋째, 국가배상법률의 규정상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불완전하여 삼청교육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적인 배상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 것, 즉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의 판시사항이다. 삼청교육피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같은 일반법이 존재하는 이상 특별히 헌법상 국회의 별도의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선, 국가배상법은 3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전제로 제정되어 있는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가 과연 삼청교육과 같은 국가범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로써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국가범죄의 경우, 그 피해는 현실적으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불법 내지는 위법한지의 여부는 오랜 진실규명 혹은 역사적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국가는 언제나 나름의 정당성의 가면하에 범죄에 나서게 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법률이거나 혹은 국가적 위기조장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법리이다. 더구나 이러한 법률이나 법리의 효력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그 국가의 막강한 권력이며 따라서 그 국가행위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막강한 권력이 소멸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국가권력이 충실한 진실규명을 행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한마디로, 국가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장기간의 역사적 투쟁이 있어야만 국가의 배상책임의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법률의 형식을 띤 국가범죄의 경우 법률실증주의에 젖어 있는 법원은 오히려 그 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또다른 공범으로 존재할 뿐이다. 혹은, 국가범죄가 국가긴급권의 법리에 의하는 경우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법원은 그 위법성판단의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에 대하여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였던 법원-혹은 법률이 다시 법률의 이름으로 그 억압행위에 면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그의 방론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불완전성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문제이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삼청교육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특수한 상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언하자면 이 특수한 상황은 오로지 국가배상법과의 연관하에서만 특수한 것인가? 아니면 헌법과의 연관하에서 특수한 것인가? 즉, 그 특수성이 헌법문제인지 아니면 법률문제인지의 판단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의 헌법규
하위국법규를 따
졌을 때 법률의
유효한 국가권도
유구 헌법규정이
바로 잡혔을 때
배상권 국면의 권
리부서 권수 검토
노력해야 한다.
헌법 4항 행정부
입법부는 삼청교육
헌법 입법 마땅했
94.
국가는 피해보상
헌법 마땅했어야
→ 국경 보기

삼청교육은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국가적 필요성을 강변하는 가운데, 실체적 정의든 절차적 정의든 그 어떠한 정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실시한 폭력 그 자체이다. 그것은 군사정권이라는 예외정권에 의하여 예외적 국가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순수하게 예외적인 사건이다. 헌법의 틀 밖에서 헌법 질서 자체를 무시하면서 헌법의 변개를 야기한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헌법의 규율범위 내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국가가 예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책임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것은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국가범죄척결의 요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3. 법적 정의

3.1. 입법부작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즉, 위의 헌법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입법의무판단에 있어 삼청교육사건과 국가배상법의 개별조문을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삼청교육사건과 헌법질서를 대척점으로 설정하였어야 했다. 이 사건은 개별공무원이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헌법 내적 불법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음모와 범죄에 의한 헌법파괴적 불법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헌법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군사정권의 폭거인 만큼 헌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대항장치를 구축하여야 하고, 그것은 국가배상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정되는 특별법의 존재를 요청한다.

부연하자면, 국가배상법은 국가의 무하자성 혹은 무오류성이 전제되어 있다. 주된 불법행위자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혹은 공공시설이며, 국가는 그를 대신하여 혹은 그의 행위로부터 의제됨으로써 책임을 지는데에 그친다. 하지만, 삼청교육사건은 국가 그 자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배상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구조적 하자, 혹은 국가구성상의 오류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국가의 자기반성 및 과오교정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자 그대로 헌법위반의 위헌적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태만에서부터 나온다. 국보위의 존재나 그 행위 자체가 헌법파괴적인 것임은 누차의 국가적 판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장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했다. 부연하자면, 모든 국가공무원은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진다. 만일 헌법파괴적 혹은 헌법적대적 행위가 나타나면 모든 국가공무원은 이에 대항하여 그 행위를 예방, 저지 혹은 교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무원 내지는 국가기관의 의무이다. 국회나 국회의원도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국보위에 의한 삼청교육은 헌법파괴행위의 최악의 유형이다. 그리고 그 피해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반헌법적 상황이다. 여기서 국회의 입법의무는 의연히 나타난다. 헌법이 견디지 못하는 부정의가 현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의무 이것

은 일차적으로 국회의 의무인 것이다.

3.2. 불완전입법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국가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범죄들, 즉 4.3사건부터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학살사건, 의문사사건, 민주화과정에서의 각종 탄압행위, 광주 민주항쟁사건 등은 모두가 하나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의 비극들이 단절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방이후 좌우의 대립과 미군정,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통치행태 등이 하나의 과정에서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국가형성의 과정이 미군정이나 이승만정권, 한국전쟁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지연되는 와중에서 발생하거나, 국가형성이 일단락되는 순간 들어선 군사정권이 그 국가의 성격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 하나 하나를 별도의 사건으로 보아 별도의 입법에 의하여 방편적으로 해결할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청산을 위한 불완전입법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친일·반민족사건과는 별도로 적어도 국가형성기에 나타났던, 좌·우 갈등의 외피를 가진 국가범죄와, 군사정권기에 나타났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단일하고도 포괄적인 입법에 의하여 완전한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반성과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채 지금처럼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단행법을 만들고, 그나마도 강제수사권이나 기소·처벌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미봉하려 드는 것은 그 법의 외연적 효력문제(특히 과거처리의 평등성 문제: 예로서, 거창사건, 보도연맹사건 등)는 차치하고서라도 내연적인 효과의 문제(실효성의 문제)조차 야기하게 된다.

삼청교육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민주화보상법이 군사정권의 억압체제에 대한 사후교정적 성격을 가지고 집행중이지만, 엄밀한 법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강권력의 공격을 받은 경우와 소극적인 동조로 일관하다가 “미운 털이 찌꺼서” 피해를 입은 자를 구분한다는 것조차 애매모호하거니와 더 나아가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복종하지 않거나 또는 그 정당성의 외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적극적 피해와 소극적 피해의 구분은 민주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반민주적·반인권적 국가행위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을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반성작업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원인이야 어떻든 반민주적 절차나 반인권적 처벌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그 피해를 배상하고 또 사죄함으로써 오늘 이 순간의 우리 국가가 올바른 국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촉구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국가과제일 것이다.